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논란과 그 위상

토픽분석Ⅱ

신창균 | 한국거래소 부장

1. 서론

작금 상법 개정안 중 일부인 이사 선임 시 감사위원의 별도 분리선출 규제강화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재계 측 입장에서는 사측이 지명하지 못하는 이사에 의해서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를 비롯한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재벌의 지배주주를 비롯한 오너의 독단적인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현재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나 전반적 내용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요건을 완화하려는 저항이 재계를 중심으로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정권 출범초의 의도와는 달리 경제민주화 차원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많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하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의 일환이기도 한 이사 선임 시 감사위원의 별도 분리선출에 관해 논점을 정리해 보고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감사위원회 위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감사의 지위 변천과 감사위원회의 도입 경위

감사제도는 우리 기업들에서 경영자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상법 학계를 비롯한 일반의 공통된 인식하에 감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관건이라는 데 일치를 본 부분이다. 연혁에 따르면 '84년 상법 개정 시 감사의 업무감사

권 회복(상법 제412조) 및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권 부여(동법 제391조의1), '95년 개정에서 감사 임기의 연장(2년→3년)(동법 410조), 회사에 현저한 손해 발생 시 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동법 제412조의2), 감사의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인정(동법 제412조의3),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인정(동법 제412조의4)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외환위기 이후 '99년에 도입한 미국식의 감사위원회 제도이다. 미국의 예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내의 위원회(동법 제393조의2)로 두었고 현재도 그러하다(동법 제415조의2 제1항). 그러나 이후 수차례에 걸친 특례규정의 개정¹⁾에 의해 우리의 감사위원회 제도는 미국식 감사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모하였다¹⁾.

3. 현행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제와 개정안의 논란

현행 감사위원회 제도는 사외이사(outside director), 각종 위원회(committees), 집행임원(officer)을 요소로 하는 미국식 이사회제도가 일본식으로 특화한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즉, 일본식이란 집행임원제도가 사외이사 및 위원회와 결합하여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사회는 업무집행과 경영의 의사결정을 대폭으로 집행임원에게 위임하여 신속·기동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하며, 자기 스스로는 집행임원의 감독기관으로 특화하여 이사회 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내에 지명위원회(주총에서 이사의 선임·해임안을 다룬다), 감사위원회(감사에 같음), 보수위원회(집행임원의 보수를 결정)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²⁾.

현행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반드시 설치(동법 제542조의11 제1항)하여야 하고, 감사위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동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415조의2 제2항),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동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2호).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이중 1명은 감사위원회 대표)과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제542조의 12 제2항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선출(집중투표제 선택적 적용)한 후, 선임된 이사 중

1) 이철송, '기업지배구조 관련 입법 추진현황과 과제', 상정협연구 제68호(2013.10월)

2) 앞의 주1) 참조

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3% 의결권 제한(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의 3/100 초과시) 룰이 적용되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3%를 그리고 2대주주 등 기타 대주주는 단순 3% 룰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 7월 1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를 처음부터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감사위원의 선임 단계 시 부터 3% 의결권 제한 룰이 적용되어,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합하여 3% 이내로 의결권이 제한(예컨대, 총수 일가의 지분이 50%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중 3%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나머지 47%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는 최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각자의 의결권이 3%까지로 제한되도록 하였다. 즉, 소액주주가 추천한 주주가 확실하게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전횡 등에 의한 이사선임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이다³⁾.

분리선출을 주장하는 정부 측의 입장은 현재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지만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사실상 의결권 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감사에 비해 선임 시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함으로써 선임단계부터 3% 의결권 제한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여, 선임단계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이 충실해지고 동시에 경영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주장한다⁴⁾.

그러나 소수자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주주제안권⁵⁾은 개정안의 목적처럼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후생적 배려 차원에서의 취지는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즉, 소수자주주의 보호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권리를 가진 자의 가진 것만큼의 권리행사를 보장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 현실에서 다수결의 한계, 정보의 비대칭과 같은 불가항력적 모순이 내재하므로 소수자주주가 자신의 비례적 지분에 부합하는 기회를 누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수단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소수자 주주의 보호의 취지라는 것이다. 즉, 소수자주주 보호는 결국 대주주에게 귀속할 이익을 그들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므로 비용전가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그들에 대한 단체법적 배려의 한계라 할 수 있으므로 소수주주는 이번 의무 도입 예정인

3) 최준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그 평가', 한국경제법학회 하계 학술대회(2013.8.19)

4) 법무부, 상법 중 일부 개정안, (2013.7.17.)

5)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3/10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총 개최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전부터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1,0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이사에게 주총 개최 6주전에 서면으로 일정사항을 주총의 목적사안(의제)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362조의2 제1항, 동법 제542조의6 제2항).

집중투표제와 결합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시에는 주어진 권리 이상의 것을 행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⁶⁾.

또 분리선출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라고 주장한다. 즉, 상기에서 살펴본 대로 만일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주주제안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하자는 의안이 상정될 경우, 입법예고한 분리선출 방식에 따르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 보다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회사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소액주주들의 감사위원 선임 요구를 회피하고자 하는 회사로서는 3명을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 회사들은 정관을 변경하여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1명을 감사위원회 대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는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을 통하여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요구를 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사정상 정관변경이 어려운 경우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밖에 없다는 위협이 있다. 이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에 3% 의결권 제한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계 펀드 등이 연합하여 감사위원을 선출시켜 경영에 간섭할 경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⁷⁾. 실제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뒤의 제6장 감사위원의 운용실태의 <표-4>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예외 없이 사외이사로 선임·운용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내이사로서 선임된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사이므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업무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CEO인 집행임원의 선임에도 관여할 수도 있다. 펀드 등이 선임한 감사위원은 대주주 측에서 선임한 이사와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고, 업무의 결과와 집행이 느려질 수도 있다. 칼·아이칸 등의 해외펀드들이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이익배당, 회계장부 열람청구,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자회사의 기업공개 등 온갖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⁸⁾.

<표-1> 상법 개정안이 10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

그룹명	계열사	대주주측 지분(%)	감사위원 이사 선임시 행사 가능한 의결권(%) *
삼성	삼성전자	17.32	11.67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35.63	4.75
SK	SK(주)	31.88	3.06

6) 앞의 주1) 참조

7) 앞의 주3) 참조

8) 앞의 주6) 참조

그룹명	계열사	대주주측 지분(%)	감사위원 이사 선임시 행사 가능한 의결권(%) *
LG	LG전자	33.70	3.00
롯데	롯데쇼핑	63.96	24.76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21.31	9.18
GS	GS리테일	65.75	3.00
한진	대한항공	25.78	12.34
한화	(주)한화	36.04	14.95
두산	두산중공업	41.27	3.04

* 중 굵은 활자는 의결권 상실 부분이 매우 큰 경우임
출처) 동아닷컴, 2013.8.1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경영학자 10명 가운데 8명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상법 개정안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국내 경영권을 침탈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와 주목된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경제학, 경영학, 상법을 전공한 국내 학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12일 공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안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46%(23명)가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도 34%(17명)에 달했다. ‘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견제’라는 법 개정취지에 사실상 공감을 표한 셈이다. 학자들 다수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 투기적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⁹⁾.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감사위원의 이사와의 별도 분리선출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감사위원회와 집행임원제도

집행임원제도는 이사회와 업무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이사회와 분리하여 업무집행 기능을 전담케 하는 집행임원을 두는 것이다. 현행 상법상 집행임원제의 도입은 회사 자율(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사항이어서 대표이사를 둘 수도 있고, 대표이사에 갈음하는 집행임원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사위원회를 두는 회사는 반드시 대표이사에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였다(개정안 제415조의2 제1항 후단). 따라서 회사에 감사를 둘 경

9) 뉴스토마토, 2013.9.12

우는 집행임원제가 선택적 사항이지만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는 대표이사는 둘 수 없고 집행임원을 두어야 한다. 대규모 상장회사(자산 2조원 이상)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행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¹⁰⁾. 만일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CGS의 2013년 기업지배구조 평가(2012년 사업년도 기준)에 기초해서 조사한 자산 2조원 이상(2011년 자산 총액 기준)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144사(전체 1,601사의 9.0%)는 집행임원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¹¹⁾.

집행임원제 도입의 찬성 측은 과거 각종 기업 경영 파탄이 경영감독의 부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즉, 이사회가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동시에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도 행사(상법 제393조 제1,2항)하는 즉, 자기가 자기를 감독하는 모순을 보여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다수의 사외이사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므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두는 이른바 감독형 이사회를 두고 집행임원을 따로 둬서 감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한다¹²⁾. 이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논거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형식적으로 미등기임원이라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사들에 대해 책임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재벌 옌나 2세들이 등기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회피하면서도 매우 적은 지분으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측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영위사업과 경영전략,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현행 상법상 이사는 주총에서 선임·해임되므로 소수주주가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이 있으므로 집행임원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주주 권한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¹³⁾.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 논란 역시 재계의 반발이 거세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10) 앞의 주1) 참조

11) 염수진, '집행임원제도 도입 의무화 관련 동향', CGS리포트 제3권 14호(2013.8)

12) 앞의 주1) 참조

13) 앞의 주10) 참조

5. 지주회사와 감사위원회

지주회사는 정부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등의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전환을 유도해 온 제도이다. 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단독 보유 만 허용됨으로 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계열회사나 특수회사 등이 자회사 주식을 분산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고, 손회사 주식은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단독 보유가 강제된다. 지주회사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20% 이상을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행위로 인해 이사선임에 있어 의결권 제한이 초래하는 부작용 내지는 폐해가 극대화될 수 있다. 즉, 아래 <표-2>에서 보듯이 지주회사는 계열사에 대한 지배주주로서 보유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상실한다. 지주회사를 둔 기업집단은 지분의 교차보유가 금지되는 관계로 이론상 소수주주 몇몇 곳이 연합하면 쉽게 대주주들 보다 많은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갈 수 있게 된다.

<표-2> 지주회사 체제에 있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의 의결권 상실 예

그룹	지주회사명	지배주주로서의 지분율(A)	의결권 상실 지분율(A-3.0%)
LG	(주) LG	LG전자(33.7%)	33.7-3.0=30.7%
		LG화학(33.5%)	33.5-3.0=30.5%
		LG생활건강(34.0%)	34.0-3.0=31.0%
		LG유플러스(36.0%)	36.0-3.0=33.0%
SK	(주)SK	LG디스플레이(37.9%)	37.9-3.0=34.9%
		LG이노텍(47.9%)	47.9-3.0=44.9%
		SK이노베이션(33.4%)	33.4-3.0=31.4%
		SK텔레콤(25.2%)	25.2-3.0=22.2%
	SK텔레콤	SK네트웍스(39.7%)	39.7-3.0=36.7%
		SKC(44.8%)	44.8-3.0=41.8%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50.7%)	50.7-3.0=47.7%
		SK하이닉스(21.1%)	21.1-3.0=18.1%

출처) 최준선, '상법개정안의 주요쟁점과 그 평가', 한국경제법학회 하계 학술대회(2013.8.19)

이에 반해 <표-3>에서 보듯이 지주회사 체제로 이행하지 않은 대규모 기업집단 중 하나인 롯데그룹의 경우를 일례로 보면, 같은 사안에 있어서 지배주주들의 롯데쇼핑에 대한 의결권 상실비율이 전체 63.96% 중에서 39.20%의 의결권을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24.76%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외펀드 등 소수주주의 연합공격으로부터 안전

하다 할 수 있다.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 권장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취지에 반하는 결과, 외부로부터의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경영권 행사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결국은 회사가치의 훼손과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¹⁴⁾.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제도는 금년 내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인해 오히려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옥죄는 규제가 되고 있다는 불만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무튼 정책당국은 이런 미비점에 대한 보완조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표-3〉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의 예

그룹	회사명	지분율(지배주주 지분율의 합계)	의결권 상실 지분율 *	지배주주
롯데	롯데쇼핑	63.96%	39.20% (24.76%)	신동빈 13.46% 신동주 13.45% 호텔롯데 8.83% 롯데제과 7.86% 한국후지필름 7.86% 롯데정보통신 4.81% 롯데칠성음료 3.93%

* 상기 의결권 상실 지분율 중 괄호 밖은 3% 의결권 제한규정으로 의결권을 상실하는 지분율의 합. 괄호 안은 의결권을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
출처) 최준선, '상법개정안의 주요쟁점과 그 평가', 한국경제법학회 하계 학술대회(2013.8.19)

6. 감사위원회 운용실태

가. 시총 상위 10위 기업의 감사위원회 운용 실태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중 시총 상위10사(모두 자산 2조원 이상)는 전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중 3명 이상을 전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에는 회계 또는 재무관련 전문가가 1~2명 포함되어 있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사외이사의 직업별로 구분해 볼 때, 전직 금융계 CEO, 판·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출신의 공무원, 경영학 전공 대학교수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이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사외이사가 많은

14) 앞의 주3) 참조

것은 아무래도 기업에 문제 발생 시 대외로비 창구역할을 할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지을 수없는 게 사실이다.

〈표-4〉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총 상위 10사의 감사위원회 운용 현황

시총 상위 10위 (‘13.9월말)	사외이사수(명)						감사위원회 개최횟수(회)			사외이사 직업별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삼성전자	3	4(3)	3	4(3)	4	5(3)	7	8	9	금융, 법조, 교수
현대차	4	4(4)	4	5(4)	4	5(4)	5	5	3	국세청, 법조, 교수
POSCO	5	8(3)	5	7(3)	5	7(3)	8	8	12	기업, 법조, 교수
현대모비스	4	3(3)	3	5(5)	4	5(5)	5	5	5	법조, 국세청, 공정위, 교수
기아차	3	4(3)	4	5(3)	4	5(3)	4	4	5	국세청, 교수
SK하이닉스	4	9(3)	4	5(3)	4	5(3)	11	12	11	법조, 교수, 금융, 공무원
삼성생명	4	6(3)	2	6(3)	4	5(3)	5	5	5	공무원(상근감사위원), 교수
신한지주	2	10(3)	2	10(3)	2	10(4)	10	10	10	기업, 교수, 법조
LG화학	3	4(3)	3	4(3)	5	6(3)	6	5	5	교수, 기업인, 금융
현대중공업	3	4(3)	3	4(3)	3	4(3)	2	3	5	기업인, 법조, 교수

주1) 사외이사 수의 좌측은 사내이사, 우측은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 중 괄호 안은 감사위원 숫자임. KRX에 공시한 각 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 기준 내용임.

주2) 사외이사의 직업은 연도별과 상관없이 전직 또는 현직 직업(중복)을 가르킴.

출처) KRX 공시시스템(KIND)상의 각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또 감사위원회 개최의 주요 안건은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주총 의안 검토, 내부 감사실적 보고, 내부감시 장치 가동 현황, 내부관리 회계제도(자산 1천억 이상인 상장 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화되어 있으며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토록 되어 있음) 운영 검토, IFRS 등 회계기준 도입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개최안건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찬성 가결 의견이었다.

CGS가 작성한 ‘2013년 기업지배구조 등급평가’ 항목 중 감사위원회가 포함된 이사회 의 독립성 여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면, ① 상기 시총 10사 중 POSCO, 삼성생명, 신한지주는 CEO와 이사회회장 분리 여부에 있어 이사회회장을 사외이사가 맡고 있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② 감사기구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지원기구로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업무부서가 감사위원회 혹은 대표이사직속으로 설치된 회사는 SK하이닉스, POSCO, 현대모비스, 삼성생명이었다. 특히 ③ 감사위원의 감사 전문기관 교육 수료와 관련해서는 상기 10사 중 POSCO가 유일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POSCO는 앞의 ①과 ②를 포함한 세 가지 항목 모두를 충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POSCO는 CGS가 매년 시상하는 ‘기업지배구조(사회, 환경부문 포함) 등

급평가'의 2013년도 시상식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였다. 독립적이며 능동적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한 바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CGS는 2013년 최초로 CGS의 「기관투자자의결권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전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의안분석안'을 작성한 바 있다. 그 중 상기 시총 상위 10사의 주총안건을 대상으로 감사위원의 선출안건에 대한 의안분석 자료를 추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16명의 감사위원 후보 선출 건 중 6명에 대하여 반대 권고(반대율 37.5%)가 있었다. 또 감사위원 후보가 1명이라도 있는 회사 중 반대가 1명이라도 있는 회사의 비율은 66.7%(6명/9명)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요 선출 반대사유는 그룹 계열사 등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선임, 과거 다른 회사 감사위원 재임 시절 외부감사인과 독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장기 연임 등 모두가 감사위원의 독립성 저해에 대한 우려가 기본적인 반대사유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외이사의 낮은 독립성 상황 등이 이사 중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3%로 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감사·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문조사에 관한 실태

CGS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국내기업의 사회적책임(CSR)활동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2011.12.1~2011.11.23,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239명 및 일반투자자 520명 대상)'에 따르면, 지배구조 부문의 감사기구 항목에서 내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내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10.5%에 불과하였고, 48.6%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경영자의 내부감사인 추천 및 선임(67.3%)', '내부감사인의 전문성 부족 또는 시간투입 부족(21.1%)'을 주로 지적하였다. 한편, 내부감사조직의 효율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감사위원회, 상근 감사 등 내부감사조직의 효율성이 모두 유사하다는 의견(33.5%)을 제시한 반면, 일반인 그룹에서는 2명중 1명(49.9%)이 감사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응답을 하여 감사위원회의 업무효율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2.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절하다는 응답은 12.2%에 불과하였다.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이 부적절한 이유로는 '외부감사인과 기업 간의 종속관계(70.3%)'가 가장 높았고, '동일 외부감사인의 장기간 감사로 인한 유착(12.6%)' 그리고 '분식회계 관행 및 이에 대한 제재 불충분(5.7%)'순으로 지적하였다¹⁵⁾.

7. 감사·감사위원회의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위상과 문제점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의 입법의도는 결국 기업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못한 데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기업내부의 감시·감독 기능인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상법상의 감사제도를 비롯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부관리회계제도,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 및 기업내부의 감사관련 하부조직 등이 모두 내부통제 관리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상법상의 감사는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은 물론 이사회 권한사항까지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부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열심히 수행하려 해도 인해 자신의 입지나 임기 이후의 문제 등 여러 이유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감사의 감시·감독 기능은 사후적 보다 사전적 예방 차원의 활동이 가장 바람직하다. 감사제도의 실효성 저하 원인으로는 ① 회사의 대주주와 CEO 등이 감사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과 이해 협조 부족(성공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가장 큰 장애 요인), ② 객관적 감사환경의 문제로써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있는 감사보조기구의 지원 취약¹⁶⁾, ③ 감사 스스로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전문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효과적인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외부감사인과의 상호협조와 업무연계가 중요하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실질적인 선임권한을 대표이사 및 경영진(56.8%),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15.9%)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가 선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회계감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감사에게 실질적인 외부감사인 선임권을 부여토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¹⁷⁾. 이러한 현상을 볼 때, 가끔 터져 나오는 기업의 회계부정은 회사의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갑과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15) CGS, '기업지배구조백서(2012년)', p308~309

16)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714사, 2010.8월 기준)의 감사 운영실태를 보면, 감사 설치회사는 492사(전체의 68.9%)에 감사 수 583명(1사당 1.18명), 이중 상근감사 416명(1사당 0.85명)으로 상근감사가 없는 회사도 적지 않다. 또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222사(전체의 31.1%)에 감사위원 수는 669명(1사당 3.10명)이고, 이중 상근감사위원은 66명(1사당 0.3명)이며 대부분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등 인력부족으로 나타나 감사보조기구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상장', 2011.7월호p5

17) 본 장의 내용은 서준석, '시사칼럼: 감사·감사위원의 기능과 위상을 제고해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상장', 2011.7월호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8. 결론

감사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는 결국은 그 구성원인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 자체도 역시 이사이기 때문에 단지 상근감사가 근무하는 기업과는 달리 그 업무영역은 단지 이사회에 대한 감독 차원을 넘어서 이사회 의 다루는 경영현안에 대한 결정권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상법 일부 개정안에서 감사위원인 이사의 별도 분리 선출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래 이를 신뢰감 있게 운용해 오지 못한 재벌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오너들에 대한 정부의 불신이 깊게 깔려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 스스로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외이사 및 거수기에 불과한 사외 이사의 등용, 감독기능 보다는 기업과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특정 사외이사의 장기 연임, 정부 등 감독당국에 대한 로비 목적의 사외이사의 기용, 재벌 친인척에게 편법적인 부의 증여 수단으로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일감몰아주기 등 대규모 상장회사들의 오너의 전횡에 대한 폐해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규제강화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 반대 측의 주장처럼 이사인 감사위원의 별도 분리선출 안이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과거 2006년 칼 아이칸에 의한 KT&G의 이사 선임 요구 등의 경우처럼 3% 제한 룰을 피하기 위한 해외펀드 등 외부세력의 경영권 간섭도 실제로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재계의 강경한 불만을 도외시 할 수만은 없어 지금의 상황으로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시행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감사위원의 별도 분리선출을 비롯한 기타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왜 강력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재계나 대규모 상장회사의 오너들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CGS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IMF 유동성 위기 이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반의 사외이사 내지 감사·감사위원의 독립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아직 깊기 때문이다. 아무튼 찬반 양측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정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